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shoh@kiep.go.kr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위원
jhpark@kiep.go.kr

김민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위원
mskim411@kiep.go.kr

이창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
chslee@khu.ac.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DDA 협상은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앞두고 주요국간 조기 수확 패키지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WTO 회원국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조기수확(early harvest) 의제로 거론되었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 일부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의 이슈를 발리 각료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성과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무역원활화(TF: Trade Facilitation)는 2009년 12월 통합협정문(안)이 배포된 이래 최근까지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협상분야로 이미 회원국들 사이에서 협상진전이 빠른 대표적 의제로 인식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는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스위스, 제네바)의 성과도출을 위한 사전협상에서도 조기수확이 가능한 대표적인 의제로 선정된 바 있음.
- 농업분야는 관세나 민감(특별)품목,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같은 기존의 핵심 쟁점들은 제외하고 TRQ 관리(TRQ administration)개선과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 농산물 수출경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음.
 - TRQ 관리는 2012년 9월 G20이 제안한 의제로 UR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설정된 농산물쿼터가 낮은(혹은 무세인) 수입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이 해당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소위 ‘TRQ 미소진(underfi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개도국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는 인도가 제안한 의제로 2008년 이후 빈발하는 곡물 가격의 폭등·폭락 현상과 관련하여 개도국 빈곤계층에 대한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보조는 감축보조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임.
 - 농산물 수출경쟁은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2013년 철폐시한을 맞아 농산물 수출개도국을 중심으로 주요 의제로 제기되었음.
- 개발(development)과 관련해서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를 중심으로 면화 보조금감축, 특혜원산지규정 등이 논의되었음.

- 이에 우리나라도 '발리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의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협상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발리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의제는 무엇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협상전략을 가지고 발리 각료회의에 임해야 하는지,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DDA 협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한편 발리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3대 이슈(무역원활화, 농업이슈, 개발의제)가 WTO 주요국(그룹)에 미치는 이해관계를 감안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WTO 회원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 우리나라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여 다자통상체제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
 -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은 국제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향후 나타날 수도 있는 WTO 체제의 개혁·개편 논의나 세계무역체제 개편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이 연구는 발리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 패키지로 논의 중인 의제를 중심으로 그것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조기수확 패키지로 합의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DDA 협상에 참가하는 주요국(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상호 이익의 균형을 가져오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발리 조기수확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농업 및 개발 분야의 일부 이슈를 중심으로 개별 의제가 갖는 의미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아울러 개별 의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되어 발리 패키지로 나타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균형점을 검토함으로써 잠정타협방안을 모색함.
 - 또한 도출된 잠정타협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을 찾음.
 -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문에 답을 구하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둠.
 - 발리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 조기수확 패키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의제의 경제적 함의는 무엇인가?
 -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이 발리 패키지로 통합되어 합의가 도출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WTO 주요국(그룹)간 이해득실은 어떻게 되는가?
 - 발리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 패키지 도출을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무역원활화

①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 OECD에서 개발한 무역원활화 지수를 인용

- OECD 무역원활화 지수는 DDA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합협정문안에 기초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협상내용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
- 특히 대상국가의 수출입 및 통과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관련 웹사이트, 통계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개별 국가로부터 확인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자료임.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의 무역원활화 지수는 [표 1]과 같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절차의 자동화와 불복절차는 최고 수준이나 사전심사, 수수료 및 요금, 절차의 간소화,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여타 항목이나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국가별 OECD 무역원활화 지수값

	사전 심사	불복 절차	외부 협력	내부 협력	수수료 및 요금	절차의 자동화	문서의 간소화 및 조화	절차의 간소화	거버넌스 및 공정성	정보 이용 가능성	이해 관계자 참여
미국	2.0	2.0	1.6	1.7	1.5	2.0	0.8	1.1	2.0	1.9	1.8
EU	1.5	1.5	0.8	1.2	1.6	1.5	1.3	1.1	1.7	1.6	1.6
한국	1.4	2.0	1.6	1.7	1.3	2.0	1.6	1.3	1.5	1.6	1.0
중국	1.5	1.7	N.A	1.0	2.0	1.3	1.2	1.3	1.9	1.6	1.5
브라질	1.6	1.8	1.6	1.0	1.5	1.3	1.5	1.1	1.7	1.8	1.7
인도	2.0	1.7	N.A	2.0	0.5	1.5	1.4	0.9	1.8	1.9	1.4
LDC	0.5	1.1	1.4	1.2	1.0	0.9	0.9	1.0	1.3	1.3	0.6
기타 선진국	1.6	1.8	1.3	1.8	1.7	1.8	1.3	1.2	1.8	1.7	1.7
기타 개도국	0.9	1.4	1.1	1.3	1.3	1.1	1.2	1.1	1.6	1.6	1.3
기타 국가	1.0	1.7	1.4	1.8	1.2	1.3	1.7	1.2	1.6	1.6	0.8

자료: Moise 외(2011, 2013)에서 제시된 수치를 re-scaling하여 계산.

②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의 추정

●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

- 무역원활화를 일종의 비관세조치 개선으로 보고 무역원활화에 대응하는 관세상당치를 계측

● 대표적인 주요 산업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

- 곡물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의 관세상당치에 비해 값이 낮은 가운데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과 브라질의 관세상당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2).
- 이는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원활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

[표 2] 주요 곡물의 관세상당치

(단위: %)

	브라질	중국	기타 개도국	기타 선진국	EU28	인도	한국	최빈개도국	기타	미국
브라질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중국	2.08		2.08	2.08	2.08	2.08	2.08	2.08	2.08	2.08
기타개도국	2.30	2.40		2.37	2.70	2.46	2.47	2.05	2.66	2.36
기타선진국	1.11	1.06	1.05		1.10	1.06	1.10	1.18	0.85	1.06
EU28	1.44	1.76	1.68	1.66		1.65	1.85	1.81	1.25	1.77
인도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1.98
한국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최빈개도국	3.10	2.98	3.13	2.73	3.04	3.06	2.74		3.04	3.09
기타	2.69	2.19	2.14	2.16	2.09	2.43	2.33	1.87		2.36
미국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주: 1) 표에서 좌측 세로 열은 수입국(그룹)을, 상단 가로 행은 수출국을 의미

2) 수입국 지표인 절차 간소화, 절차 자동화, 문서 간소화 및 조화의 관세상당치를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임.

3) 각 지표의 관세상당치가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간주하였고, 추정이 안 된 경우는 해당 수입국 관세상당치의 평균값으로 대체
자료: 저자 계산.

- 제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농산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3, 4, 5 참조).
 - 화학부문은 최빈개도국과 인도, EU의 관세상당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은 화학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화학분야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전자는 화학이나 철강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의 관세상당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화학분야의 관세상당치

(단위: %)

	브라질	중국	기타 개도국	기타 선진국	EU28	인도	한국	최빈 개도국	기타	미국
브라질		59.46	59.46	59.46	59.46	59.46	59.46	59.46	59.46	59.46
중국	43.75		43.75	43.75	43.75	43.75	43.75	43.75	43.75	43.75
기타개도국	58.70	57.82		58.33	58.02	57.82	57.82	57.34	62.69	57.82
기타선진국	55.37	55.37	55.81		55.37	55.37	55.37	57.33	55.91	55.37
EU28	63.23	63.23	65.57	63.45		63.23	63.23	66.60	65.13	63.23
인도	76.88	76.88	76.88	76.88	76.88		76.88	76.88	76.88	76.88
한국	43.75	43.75	43.75	43.75	43.75	43.75		43.75	43.75	43.75
최빈개도국	70.55	70.55	72.51	71.88	71.14	70.55	70.55		78.36	70.55
기타	57.46	57.46	60.83	57.65	56.48	57.46	57.46	65.88		57.46
미국	59.46	59.46	59.46	59.46	59.46	59.46	59.46	59.46	59.46	

자료: 저자 계산.

[표 4] 철강분야의 관세상당치

(단위: %)

	브라질	중국	기타 개도국	기타 선진국	EU28	인도	한국	최빈 개도국	기타	미국
브라질		64.95	64.95	64.95	64.95	64.95	64.95	64.95	64.95	64.95
중국	50.13		50.13	50.13	50.13	50.13	50.13	50.13	50.13	50.13
기타개도국	67.75	65.38		66.19	66.59	65.38	65.38	64.66	73.67	65.38
기타선진국	62.32	62.32	61.76		62.44	62.32	62.32	63.37	65.68	62.32
EU28	70.51	70.51	72.95	70.64		70.51	70.51	75.98	70.27	70.51
인도	83.91	83.91	83.91	83.91	83.91		83.91	83.91	83.91	83.91
한국	47.87	47.87	47.87	47.87	47.87	47.87		47.87	47.87	47.87
최빈개도국	80.58	80.58	84.86	81.31	82.48	80.58	80.58		101.01	80.58
기타	62.63	62.63	66.98	63.84	60.45	62.63	62.63	69.86		62.63
미국	68.97	68.97	68.97	68.97	68.97	68.97	68.97	68.97	68.97	

자료: 저자 계산.

[표 5] 전자분야의 관세상당치

(단위: %)

	브라질	중국	기타 개도국	기타 선진국	EU28	인도	한국	최빈 개도국	기타	미국
브라질		30.11	30.11	30.11	30.11	30.11	30.11	30.11	30.11	30.11
중국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32.64
기타개도국	38.18	38.02		37.91	38.00	38.02	38.02	37.81	36.52	38.02
기타선진국	35.78	35.78	35.32		35.78	35.78	35.78	35.57	33.73	35.78
EU28	36.92	36.92	39.52	36.80		36.92	36.92	41.96	39.78	36.92
인도	37.17	37.17	37.17	37.17	37.17		37.17	37.17	37.17	37.17
한국	23.27	23.27	23.27	23.27	23.27	23.27		23.27	23.27	23.27
최빈개도국	55.05	49.75	50.35	49.62	49.51	49.75	49.75		49.72	49.75
기타	23.04	27.24	26.48	27.23	26.04	27.24	27.24	25.05		27.24
미국	47.38	47.38	47.38	47.38	47.38	47.38	47.38	47.38	47.38	

주: 1) 표에서 좌측 세로 열은 수입국(그룹)을, 상단 가로 행은 수출국을 의미

2) 수입국 지표인 절차 간소화, 절차 자동화, 문서 간소화 및 조화의 관세상당치를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임.

3) 각 지표의 관세상당치가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간주하였고, 추정치 안 된 경우는 해당 수입국 관세상당치의 평균값으로 대체
자료: 저자 계산.

③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중력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관세상당치를 CGE 모형에 투입한 후 개도국에 한해 무역원활화의 관세상당치를 가상적으로 10~20% 감축
- 무역원활화 조치개선으로 인한 혜택은 예상대로 모든 참여국가에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 전체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 실질 GDP 증감률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원활화 이행으로 미국은 실질 GDP가 약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U와 다른 선진국들은 0.8~1.0%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의 경우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무역원활화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된 것이, 그리고 여타 선진국도 미국에 비해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게 나온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효과가 도출된 이유로 판단됨.
 - 한편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그룹이 무역원활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음.
 -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은 무역원활화를 통해 두 자리 이상의 실질 GDP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6.0~6.3% 증가하여 GDP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무역원활화 경제효과(자본축적 모형): 관세상당치 10% 감축시

	불변GDP변동		후생증가 (백만 달러)	수출변동	
	증가율(%)	변동액 (백만 달러)		증가율 (%, 수량)	증가율 (%, 금액)
미국	0.33	63,854	60,358	△0.40	△0.53
EU28	0.97	188,312	152,409	0.05	△0.54
중국	6.02	223,989	194,359	6.84	5.34
인도	4.28	90,156	78,939	△1.31	△1.78
브라질	0.65	5,980	△1,290	1.60	△5.95
한국	0.69	7,630	6,619	0.76	0.62
최빈개도국	12.80	49,445	43,684	△16.08	△16.06
기타선진국	0.80	70,502	50,813	0.11	△0.51
기타개도국	11.16	670,995	599,658	△5.76	△6.77
기타	3.33	12,826	6456	△15.83	△15.31

자료: 저자 계산.

-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보면 선진국은 전체로¹⁾ 약 3,227억 달러의 실질 GDP 증가와 2,686억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개도국도 전체로는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달러가 넘는 GDP 증가효과와 9,284억 달러에 이르는 후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농업 TRQ

① TRQ 소진율과 TRQ 관리방식

- TRQ 관리방식은 예상했던 대로 소진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매제에 의한 TRQ 관리가 소진율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로움.
 - 경매에 의한 TRQ 관리도 운용방식에 따라 충분히 복잡한 제도로 운용할 수 있고, 특히 입찰방식과 낙찰방식을 어떻게 제도화하는가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입차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업자(체)측면에서 TRQ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Random effect모형에서 선착순 방식의 TRQ 관리는 평균적으로 약 10%의 소진율 제고 효과가 있음.

[표 7] TRQ 소진율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추정결과

변수	Pooled Tobit		Random Effect Tobit	
경매(AU)	△0.844	(12.11)**	△1.096	(17.21)**
선착순(FC)	△0.243	(5.06)**	0.1010	(5.31)**
과거실적(HI)	△0.188	(3.80)**	△0.167	(3.46)**
허가(LD)	△0.487	(10.72)**	△0.492	(9.86)**
혼합(MX)	△0.362	(6.32)**	△0.162	(3.13)**
국영무역(ST)	△0.099	(1.12)	△0.806	(9.43)**
국제가격	0.002	(0.58)	△0.003	(0.26)
환율	0.0014	(0.037)	△0.0027	(4.34)**
전기 생산	0.0014	(0.37)	△0.001	(1.13)
쿼터내관세	△0.001	(5.36)**	0.001	(1.45)
쿼터밖관세	△0.0003	(3.49)**	△0.005	(2.64)**
1인당 GDP	0.0006	(5.44)**	△0.0005	(0.06)
인구	0.0003	(1.80)	0.0081	(1.69)
상수항	0.9030	(28.09)**	0.7920	(21.56)**
로그(Likelihood)	-3897.99		-2595.07	

주: 1) () 안은 t-value.

2) **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계산.

1) 여기서 선진국은 미국, EU, 기타 선진국의 합을 의미한다.

②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 미국과 EU를 포함하여 기타 선진국을 중심으로 TRQ품목에 한하여 해당 품목의 관세를 20% 감축

- WTO 회원국 대부분의 TRQ 소진율이 65% 이상이어서 TRQ 관리개선 효과가 특정국의 특정 TRQ 품목에 한정됨(개도국의 경우 TRQ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 제외).
- 감축률을 20%로 설정한 것은 선착순 방식에 의하여 TRQ 소진율이 10% 개선된다는 기존 TRQ 소진율과 TRQ 관리방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발리 패키지에 따른 경우 TRQ 소진율이 65% 미만이면 WTO 감시대상 품목이 되어 선착순 방식 등으로 TRQ 관리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

● 농업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 TRQ 관리개선에 따른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가운데 그나마 농업부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과 개도국들이 다소나마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선진국의 경우 실질 GDP 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 가운데 미국과 EU를 제외한 선진국그룹이 다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도국은 브라질의 실질 GDP가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개도국그룹도 농업 TRQ 개선으로 다소나마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농업 TRQ 개선 효과 (자본축적 모형)

	불변 GDP 변화		후생 증가 (백만 달러)
	증가율(%)	변동액(백만 달러)	
미국	0.00	△91	90
EU28	0.00	344	379
기타 선진국	0.01	1,026	932
선진국 계		1,279	1,401
중국	0.00	133	67
인도	0.00	△36	△15
브라질	0.03	397	465
한국	0.03	320	248
최빈개도국	0.00	14	31
기타 개도국	0.01	463	317
기타 국가	0.00	42	1
개도국 계		1,333	1,114

자료: 저자 계산.

3)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선진국의 대최빈개도국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97%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CGE 모형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
- 최빈개도국 무관세 경제효과는 예상했던 대로 주로 최빈개도국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
 - 최빈개도국 무관세로 인하여 최빈개도국의 실질 GDP는 0.62% 증가
- 그 외 다른 국가는 실질 GDP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다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은 예상대로 실질 GDP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과 달리 중국의 실질 GDP도 크지 않지만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EU는 실질 GDP가 다소 늘어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후생과 수출도 실질 GDP 변화흐름과 유사
 -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 무관세 효과는 확실히 최빈개도국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표 9] 최빈개도국 무세화의 경제효과: 거시경제 (자본축적모형)

	불변 GDP 변동		후생증가 (백만 달러)	수출변동	
	증가율(%)	변동액 (백만 달러)		증가율 (%, 수량)	증가율 (%, 금액)
미국	0.00	△327	△922	0.11	0.09
EU28	0.00	296	△465	0.04	0.02
중국	△0.02	△680	△757	△0.03	△0.04
인도	0.00	△44	△48	0.01	0.02
브라질	0.00	20	27	0.00	0.01
한국	△0.01	△57	△74	0.00	0.00
최빈개도국	0.62	2,643	3,262	2.38	3.23
기타 선진국	0.00	31	14	0.01	0.00
기타 개도국	0.00	△273	67	△0.02	0.00
기타	0.00	25	156	0.00	0.02

자료: 저자 계산.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 농산물 수출보조금 최대 사용국인 EU와 미국이 이미 상당 부분 보조수준을 줄여 발리 패키지의 제안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
- 본 연구에서도 CGE 모형을 이용하여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감축)의 영향을 추정하되 최근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급실태를 감안하여 발리 패키지에 의해 실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선진국에 한하여 해당 품목별 수출보조금을 감축
 - 대상품목은 실제 농산물 수출보조금이 지급된 곡물과 과일 및 채소(유지작물 포함), 기타 농산물 및 축산물과 낙농 등 5개 품목으로 한정.²⁾
-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에 따른 영향은 예상했던 대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실질 GDP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수출보조금을 감축한 기타 선진국그룹만 절대적 액수 면에서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효과(자본축적모형): 30% 감축(미국, EU 제외)

	불변GDP변동		후생증가	수출변동	
	증가율(%)	변동액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증가율 (%, 수량)	증가율 (%, 금액)
미국	0.00	87	84	0.00	0.00
EU28	0.00	94	54	0.00	0.00
중국	0.00	25	23	0.00	0.00
인도	0.00	10	10	0.00	0.00
브라질	0.00	16	13	0.00	0.00
한국	0.00	3	△2	0.00	0.00
최빈개도국	0.00	0	△3	0.00	0.00
기타선진국	0.00	△121	△64	0.00	0.00
기타개도국	0.00	61	35	0.00	0.00
기타	0.00	4	△2	0.00	0.00

자료: 저자계산.

2) GTAP상 수출보조변수는 rTMS이고 이 값이 양(+)이면 수출세가 되고 이 값이 음(-)이면 수출보조가 된다. 여기서는 기타 선진국 그룹의 5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rTMS의 값이 음인 경우를 선택해 이를 30% 감축, 10%와 20% 감축하는 경우도 정책실험을 해 보았으나 그 효과가 너무 작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여기서는 30% 감축을 가정하였다.

5)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① 기본 가정

- 국가분류는 GTAP 8.1 데이터베이스의 135개국을 DDA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군)를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통합
 - 우리나라(KORE)를 포함하여 미국(USAA), EU(EU28), 중국(CHIN), 인도(INDI), 브라질(BRAZ), 최빈개도국(LDCS), 기타 선진국(DPED), 기타 개도국(DING), 그리고 기타 세계(OTHE)
- 산업분류는 연구 목적상 농업과 최빈개도국 관심품목을 감안하여 GTAP 8.1 데이터베이스상의 57개 산업을 18개 부문으로 통합
 - 농업은 식량안보상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곡물을 비롯하여 과채 및 유지류, 설탕, 기타 농산물, 축산물, 낙농품, 가공 농산물(음료 및 기타 농업 포함) 등 8개 산업으로 구분
 - 제조업은 개도국 또는 최빈개도국 관심분야를 별도로 분리하고자 원유와 가스, 채취업을 하나로 묶어서 채취업으로 분류. 섬유 및 의류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하나로 통합하여 분류했으며, 기타 금속도 금, 동 등 최빈개도국의 수출관심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
 - 나머지 목재, 화학 및 고무, 철강, 자동차 및 수송기기, 전기 및 전자, 기계 등 제조업은 9개 부문으로 분류

② 시나리오 설정

- 우선 기본 시나리오로 무역원활화만 고려한 후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하기 위해 농업분야의 TRQ 관리 개선과 농산물 수출보조 감축,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등을 모두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를 설정
 -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

[표 11] 발리 통합패키지에 대한 시나리오

구 분	무역 원활화	농업 이슈		개발 이슈 (LDC 무관세-무쿼터)
		TRQ 개선	수출보조 감축	
기준 시나리오	◎			
비교 시나리오		◎	◎	◎

자료: 저자 작성.

③ 시장개방 수준

- 무역원활화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상당치 10% 감축
- 농업부문의 TRQ 관리 개선은 TRQ 품목이 존재하는 부문에 한정하여 해당 관세율을 20% 감축
-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는 실제 문제가 되는 기타 선진국들의 대상품목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
- 개발이슈에서는 홍콩 각료회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여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97% 관세감축을 가정

[표 12] 발리 통합패키지 시장개방안

분 야	시장개방안	
	대상국	감축률
무역원활화	전체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 10% 감축
농업 이슈	TRQ 관리 개선	선진국과 한국 및 중국 곡물, 과일/채소(유지작물), 설탕, 축산, 낙농 등 5개 부문 관세 20% 감축
	수출보조 철폐	기타 선진국 그룹 곡물, 과일/채소(유지작물 포함), 기타 농산물, 축산물, 낙농 등 5개 부문 수출보조금 및 수출관세 철폐
개발 이슈 (최빈개도국 무관세)	선진국	최빈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97% 감축

자료: 저자 작성.

④ 경제적 효과

-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소비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³⁾
-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3) 추가소비 여유란 발리 패키지 이행 이전에 정부 및 기업, 가계 등이 소비하던 전체 상품을 발리 패키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소비한다고 가정한 후 남게 되는 부분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표 13】 발리 패키지의 거시경제 효과: 우리나라 기준

		무역원활화 효과		농업 및 개발부문 효과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실질 GDP 변화	증감률(%)	1.5	3.9	0.03	0.06
	금액 (억 달러)	166	430	3.1	6.4
후생 변화 (억 달러)		136	358	2.3	4.5
수출 증감률 (%)		4.3	7.4	0.06	0.1

주: 여기서의 금액은 2008년 기준 금액임.

자료: 저자 계산.

-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 이행으로 인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이유로 추측
 -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별 국가로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브라질은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관세상 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
-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가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⁴⁾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여기서 선진국은 미국, EU, 기타 선진국의 합을 의미한다.

[표 14] 발리 패키지 무역원활화의 거시경제 효과(자본축적모형)

	불변 GDP 변화		후생 증가 (백만 달러)
	증가율(%)	변동액(백만 달러)	
미국	0.94	179,628	163,470
EU28	3.50	680,290	611,426
기타 선진국	3.50	307,910	260,599
선진국 계		1,167,828	1,035,495
중국	6.90	256,747	233,696
인도	5.44	114,453	105,819
브라질	0.62	5,748	△ 1,125
한국	3.90	42,974	35,778
최빈개도국	14.15	54,693	48,109
기타 개도국	11.16	670,651	610,004
기타	2.16	8,319	390
개도국 계		1,153,585	1,032,671

주: 여기서의 금액은 2008년 기준 금액임.
자료: 저자계산.

●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유사
-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측.⁵⁾

5) 농업 TRQ에서 중국의 낮은 TRQ 소진율과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 저하 추이 등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표 15] 발리 패키지 농업 및 개발의 거시경제 효과(자본축적모형)

	불변GDP변동		후생증가	수출변동	
	증가율(%)	변동액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증가율 (%, 수량)	증가율 (%, 금액)
미국	0.00	△389	△804	0.14	0.12
EU28	0.00	672	△68	0.05	0.03
중국	△0.02	△538	△682	0.00	△0.01
인도	0.00	△77	△59	0.02	0.03
브라질	0.03	422	497	0.08	0.20
한국	0.02	264	173	0.05	0.04
최빈개도국	0.62	2,657	3,292	2.40	3.25
기타선진국	0.01	1,017	925	0.08	0.06
기타개도국	0.01	210	396	0.09	0.10
기타	0.00	△15.2	154	0.00	0.02

자료: 저자 계산.

⑤ 잠정타협안

● 무역원활화만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됨.

-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임.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음.
-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되기만 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TO 회원국간 전체로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잠정타협안은 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성립하는 것임.

-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 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임.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함.
 - 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의제가 농업부문 의제임.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임.
 -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는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용이하지 않음.
 - 최빈개도국의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같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임.
-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임.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으며, 또한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지재권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게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은 물론 WTO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안임.⁶⁾

3. 정책 제언⁷⁾

1) 의제별 대응

① 무역원활화

-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은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을 요구하되 협상타결을 위해 양보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신축적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분야는 의무이행에 융통성을 확보하면서 국내적으로 자발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의무이행에 대비
 - 우리나라가 제안한 싱글윈도우나 위험관리의 경우 설치 의무화에 집착하기보다 주요국을 설득하여 현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

6) 이러한 본 연구에서의 예상이 실제 발리 각료회의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 TRQ가 의무 사항으로 합의되었고, 농산물 수출보조 감축이나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구속력없는 선언적 형식의 합의로 도출되었다.

7) 여기서 제시된 정책 제언은 발리 각료회의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대책에 이미 반영되어 각료회의에 활용되었다. 따라서 동 정책 제언은 각료회의가 끝난 이후의 시점에서 본다면 맞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이다.

- 사전심사 재검토 절차나 적용대상범위는 이미 한·미 FTA 이행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된 상태 이므로 신속적으로 대응
- 인가된 무역업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를 운영하면서 서류 요건 및 검사 간소화, 물리적 검사의 축소, 납세 유예, 수출입 일괄 신고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수용에 무리가 없을 것임.⁸⁾
- 특송화물의 잔여 생점사항인 화물의 무게나 금액에 관계없이 특송화물의 적용, 일정 금액 미만의 특송화물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는 최소허용(de minimis) 조항 등의 이슈는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실행 중인 조치로 우리나라가 충분히 수용 가능함
- 세관협력의 경우 세관협력의 지나친 규율화에 반대하고 있는 캐나다, EU,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기업의 영업보호와 관련 부처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 우리나라가 중점을 둔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통관 시스템의 효율화와 관련된 분야임. 특히 절차의 간소화, 문서의 간소화 및 조화, 절차의 자동화 등 통관 시스템의 효율화는 교역비용을 감소시켜 무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뚜렷함.

- 통관효율화를 위한 단계별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경험 공유 및 사례 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세관전문가 교육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유효한 대개도국 지원을 추진
- 다만 일반적으로 통과시스템 효율화에 필요한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은 매우 큰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OECD나 World Bank 등 국제기구나 여타 원조 국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며, WTO의 무역원조(Aid for Trade)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

② 농업 TRQ

● 우리나라의 핵심 TRQ 품목은 국영무역 등을 활용하여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최저기준인 소진율 6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발리 조기수확 패키지에 합의하여 조기 시행한다고 해도 국내 농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개도국 우대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주장에 맞서 G33 등 개도국그룹과의 효과적인 공조를 통해 개도국 우대를 현 수준에서 존치시켜 놓을 필요가 있음. 다만 개도국 우대논의가 자칫 개도국 세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8) 한국AEO진흥협회(2013), <http://www.aeo.or.kr/intro/intro06.php>.

● 아울러 TRQ 관리는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TRQ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

- TRQ 관련 국내제도의 법적 공고화를 추진
 - TRQ 운용과 관련하여 발리 패키지에 제시되어 있는 TRQ 관련 정보의 공표와 TRQ 신청 처리 시한 및 관련 행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조례, 시행규칙(세칙)을 이용하여 명확히 해둠으로써 관련 국내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
- TRQ 대행기관의 업무 및 농축산식품부와 관련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현재 TRQ 관리는 21개 기관이 농식품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최소한 TRQ 신청만이라도 특정 기관으로 창구 단일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한편 TRQ 관리방식을 검토하여 필요한 품목의 경우 과감히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개선할 필요(특히 종자용 TRQ는 상당 부분을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고 실수요자 자격제한을 폐지할 필요)
- TRQ 품목의 수입통계와 소진율을 자동 연계시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장치

③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분야는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신축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부 과일과 채소, 쌀 등 곡물 관세는 매우 높고 일부는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 100% 철폐가 아닌 97% 철폐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
-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1차 상품과 의류, 직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입비중이 각각 40.8% 및 80.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중 최빈개도국의 비중은 0.3% 및 1.1%에 불과.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① 무역원활화 타협안 도출에 적극 참여

- 우리나라가 제안한 분야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
 - 예를 들어 싱글윈도우는 초기 상당한 투자비용으로 인하여 선진국도 높은 의무화 수준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축적인 입장 정립이 요청
 -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제안한 의제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저해 왔던 의제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하여 우리 스스로가 신축적인 입장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임으로써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

● Section II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 아이디어 제시

- 개도국의 이행능력 평가 시 전문가그룹의 역할 범위에 선진국의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경우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지원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안
- 무역원활화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무역원활화의 실증된 혜택에 비례하는 의무적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 즉 먼저 A의무와 B의무에 속하는 조치 중심으로 무역원활화 관련 조치를 이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선진국의 대개도국 무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에 비례하여 개도국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되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말함.
- 중장기적으로 무역원활화의 대개도국 지원을 WTO 안의 무역지원(Aid for Trade)에 연계하는 한편 선진국들의 ODA정책과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②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패키지 타협안 제시

●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것도 유효

- 우리나라가 다자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과거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타협안 제시
- 타협안 골격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일부 이슈를 포함하는 모습
- 학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 결과를 국제통상무대에서 발표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전 정지작업도 병행

③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 농산물 수출보조철폐에서의 설득 논리

- WTO 수출보조금 통보자료에 기초할 때 수출보조 지급한도의 50% 이상을 주는 국가는 노르웨이 뿐이며, 미국은 1.2%에 불과(품목별로 보더라도 미국과 EU는 해당되는 품목이 없음)하고, 실제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
- 이를 통해 농산물 수출보조금 분야 타협을 법적 구속력을 포함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합의하고, 포스트 발리 work-program화하는 방향을 추진

● 선진국의 블록화 움직임을 고려

- TPP와 TTIP가 21세기의 새로운 글로벌 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WTO나 기존 FTA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이슈(서비스는 물론 공기업, 경쟁, 환경, 노동 등 소위 21세기 무역이슈)를 다루고 있어 다자무역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선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탄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칫 WTO는 개도국만의 무대로 전락하게 되어 존재 자체가 문제시될 가능성도 존재
- 이러한 관점에서 발리 각료회의는 지금까지 각료회의와 달리 개도국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완고한 입장보다는 신축적인 입장이 발리 각료회의에서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없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